

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준용 규정의 필요성

– 승객 아닌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규정관련

글. 법제처 경제법제국



가. 원안의 내용

- 「항공보안법」 제15조제2항¹⁾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,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서는 제2항의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1) <항공보안법>

제15조(승객 등의 검색 등)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,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.
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,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,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
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「경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「공항시설법」 제32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.
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,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송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 ⑥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·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⑦ 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 (이하 생략)

–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「항공보안법 시행령」 제10조 및 제11조²⁾에서는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고,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보안검색 방법을 정하고 있음.

- 한편, 법 제16조³⁾에 따르면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법 제13조 제1항⁴⁾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고,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는 승객 또는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 제15조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
2) <항공보안법 시행령>

제10조(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)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(이하 "검색장비"이라 한다)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를,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, 폭발물이나 위험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
 ② 삭제
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.
 (중 략)
 ④ 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보안에 위해(危害)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(搭載)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)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만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기 전에 그 위탁수하물이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소유인지 및 위험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폭발물이나 위험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
 (중 략)
 ③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, 항공기에 탑재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그 소유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.

3) <항공보안법>

제16조(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)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·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·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4) <항공보안법>

제13조(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.
 1.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 2.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·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
 3.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심사경과보고서

- 원안은 「항공보안법 시행령」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승객 외에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승객 또는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·절차에 관한 규정인 영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.

〈 원안: 제15조의2 〉	
현 행	원 안
〈신 설〉	제15조의2(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) ①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②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나. 문제점

- 법 제16조에서 승객 외에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(이하 “공항직원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면서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는 승객 또는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 제15조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, 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영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승객 또는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 -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공항 직원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하여 영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.



다. 검토의견



- 법 제16조에서 법 제15조제6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의 방법·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영 제10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은 당연히 준용되는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별도의 준용규정을 중복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.
- 그러나,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바,
 -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과 공항직원 등에 보안검색이 유사하기는 하나 그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승객 및 휴대물품에 관한 시행령상의 보안검색의 방법 및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어 직원등에 관한 보안검색방법 등을 승객에 대한 그것과는 다소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음.
 - 예컨대 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영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 보안검색방법 및 국가원수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, 이러한 규정은 승객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공항직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곤란한 성격의 규정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준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법 제17조⁵⁾에서도 법 제16조와 동일하게 법 제15조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, **현행 영 제16조⁶⁾**에서는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**영 제10조, 제11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.**

5) 〈항공보안법〉 제17조(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)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**통과 승객, 환승 승객,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** 하여야 한다.
 6) 〈항공보안법 시행령〉 제16조(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등) ① 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·제11조·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 ② 국내공항에서 출발하여 다른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려는 승객(휴대물품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.
 1. 출발하는 국내공항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것
 2.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기 전까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

- 법률에서 동일하게 법 제15조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통과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공항직원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
- 공항직원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방법 등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항 직원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규정에서도 영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라. 심사결과

- 제15조의2 원안을 유지

현 행	원 안
 <p><신 설></p>	<p>제15조의2(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) ①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②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</p>



질의제목

 민원인

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(可否)

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제7항 등 관련)

 안건번호 : 법제처 -17- 0088

※ 정부입법지원센터(www.lawmaking.go.kr) '법령해석'에서 관련내용을 검색·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글.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